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 - 37

발의연월일: 2019. 6. .

발 의 자: 김용원,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박주선, 윤유선, 김성한, 송순효, 송영섭, 황동현, 최동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저소득주민 지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로 구분하여 명시(안 제1조)

다. 보험료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라.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기준 변경(안 제3조)

마. 보험료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 사항 삭제(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생활보장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6. 5. ~ 6. 10.): 의견 없음

2) 전문 및 관계법령: 붙　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험료 금액이 월 1만원”을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

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험료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 1.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현행과 같음)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2호)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18,02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13,55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851로 한다.